

	<b>보 도 자 료</b>		
	배포일시	2021. 6. 4.(금) /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모빌리티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동현, 사무관 정 룡, 주무관 권민희 • ☎ (044) 201-3819, 3822
보 도 일 시		2021년 6월 7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6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캠핑카 시대 활짝... 이제 캠핑용 자동차도 렌트하세요

### - 7일부터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캠핑용 자동차(캠핑카)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,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7일(월)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입법예고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일부 개정안이 공포(21.3) 됨에 따라, 캠핑용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.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- ①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포함되는 캠핑용 자동차 유형 규정
    -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.
    - \* 캠핑용 자동차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형(1톤 화물차 튜닝) 및 경형까지 포함,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 중형 및 대형은 제외

- 또한,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\*을 9년으로 규정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하였다.

\* 차령 : 대여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사용연수

## ②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확보기준 개선

-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기준에 대해 차량당 일률적 면적(승용차의 경우 대당 13~16㎡)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,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하였고,
- 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 확보의무 경감비율을 개선\*하여 대여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\* 기존: 70% 범위 내에서 차고확보 의무 완화 → 개선: 상한 20% 범위 내에서 관할관청이 추가 완화 가능

## ③ 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등록증 반납 의무 개선

- 지금까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1일을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해왔으나, 휴업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을 면제하도록 하였다.
- 이 외에도,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두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.
-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김동현 과장은 “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, 차고 확보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대여사업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”된다고 밝혔다.

- 아울러, “앞으로도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여객운송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겠다”고 밝혔다.
-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(40일간)이고,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에 공포·시행될 예정이다.
-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 “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”에서 볼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, 팩스,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.
- \* 의견제출처: (우)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
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모빌리티정책과 / 전화 : 044-201-3822, 팩스 : 044-201-5581

 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정 룡 (☎ 044-201-381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	---